

신안군의회 규칙 제13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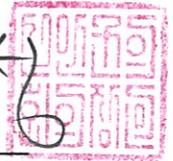
공 포 문

신안군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(2021. 12. 20.)
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을 반영한 일괄정비에 따른
신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.

2021년 12월 31일

신안군의회 의장

김혁성



붙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을 반영한 일괄정비에 따른 신안군의회
청원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1부.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을 반영한 일괄정비에 따른 신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

제1조(「신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」의 개정)

신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0조”를 “제61조”로 한다.

제2조(「신안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7조”를 “제6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신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자치 법시행령 <u>제60조</u> 에 따라 신안군 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 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61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제2조(「신안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 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<u>57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(이 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</u> <u>65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